

『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 동의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5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

나. 제안이유

- 유기성 폐기물(하수찌꺼기, 음식물폐기물, 분뇨)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지하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에너지 생산형 자원순환 시설 건설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

-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미시
광역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
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사업 개요

(1) 사 업 명 :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

(2) 총사업비 : 1,767억원

(국 975(55%), 도 73(4%), 시 146(8%), 칠곡 25(1%), 민간 548(31%))

※ 사업비 등은 제3자 공고, 실시협약, 재원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(3) 사업위치 :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(구미하수처리장 내)

(4) 사 업 량 : 475톤/일

구 분	합 계	하수찌꺼기	음식물폐기물	분뇨
계	475	255	190	30
구 미	410	220	160	30
칠 곡	65	35	30	—

(5) 사업기간 : 48개월(시운전 10개월 포함)

(6) 운영기간 : 준공일로부터 20년

※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결과

- 조사기관 : 한국개발연구원(KDI) 공공투자관리센터
- 조사기간 : 2022. 6. 22 ~ 2023. 1. 18
- 검토결과 :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[예비타당성조사 면제, VFM(민자적격성) : 1.64%(VFM >0 이상
적격성 확보)]

○ 사업의 필요성

- (1)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
안정적 처리 필요
- (2)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
(‘22.12.30)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 및 관리 필요

※ 생산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예정(시행일 : ‘25. 1. 1)

○ 추진현황

- 2022. 2. 14 : 시범사업 공모 선정(환경부)
- 2022. 3. 25 :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
- 2022. 8. 24 :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(기획재정부)
- 2023. 1. 18 :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(공공투자관리센터)

○ 향후계획

- 2023. 4 : 시의회 동의안 의결

- 2023. 6 : 제3자 제안공고
- 2023. 10 : 우선협상대상자 지정
- 2024. 5 :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- 2024. 12 : 실시계획 승인
- 2025. 1 : 공사 착공
- 2028. 12 : 공사 준공

○ 위치도 및 조감도

- 위치도



- 조감도

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제8호

○ 예산조치 : 2023년 ~ 준공시까지 예산편성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 동의안」은,

- 1987년 가동된 구미하수처리장(칠곡군 석적읍 중리)의 유기성 폐기물 시설 노후화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¹⁾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(VFM)검토에서 민자적격성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1)민간투자사업(BTO-a)

- 손실 발생시 : 민간 우선 30% 손실, 30% 초과 시 재정지원
- 이익 발생시 : 지자체와 민간이 공유(약 3:7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